

제 1654 호

1992. 5. 12.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731-6111~3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273-8111~3

시 보

차 레

● 조 래

제 2912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제 2913 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3
제 2914 호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증개정조례	4
제 2915 호	서울특별시질산검사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5
제 2916 호	서울특별시풀름판매조례증개정조례	6
제 2917 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	7
제 2918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8
제 2919 호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	8
제 292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	8
제 2921 호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	8
제 2922 호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9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노는기쁨 순간이고 일한보람 오래간다”

제 2923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증개정조례	9
제 2924 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	10
제 2925 호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	10
제 2926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	10
제 2927 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1
제 2928 호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건인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1
제 2929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	12
제 2930 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2
제 2931 호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12
제 2932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	18
제 2933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	18
제 2934 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증개정조례	18
제 2935 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체조례증개정조례	19
● 규 칙		
제 2470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증개정규칙	19
제 2471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	19
● 공 고		
제 1992-118 호	시의회부의안건공고	19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12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연구소법”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제2조”를 “제5조”로, “보건 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각종 시험·조사·연구 및 검사”를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연구”로 한다.

제3조 중 제1호 내지 제5를 다음과 같이 하고, 등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1. 전염병에 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 면역질핍증에 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질핍증, 기생충질환에 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의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수처리계·세척계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은천법에 의한 은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소 등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지방공업연구관”을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13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외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p>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p> <p>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p> <p>③위원은 투자관리관,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예산담당관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회(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이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관리담당관이 된다.</p> <p>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7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들 수 있다.</p>	<p>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판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판례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제2014호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제1조 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외장권 30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결
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15호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
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
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
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
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
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
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
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퇴임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
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
합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
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
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
가능하게 된 때

②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p>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검사위원은 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p> <p>②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p> <p>④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p> <p>제7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8조(실비보상) ①시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보수등에 관한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별지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②

③서울특별시조례제2916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 제8조 이하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점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제1항 중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이고

매일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를 “소
모품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임 물품출납원이 관서
당 경비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물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분임 물품출납원이 관서
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을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
에 대한”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
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
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영 제130조제1항”을 “제
11조의2”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
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17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
산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
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
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율	대부료 인상률
10% 이상~ 20% 미만	10% + (증가율 - 10%) × 0.3
20% 이상~ 50% 미만	13% + (증가율 - 20%) × 0.1
50% 이상~100% 미만	16% + (증가율 - 50%) × 0.06
100% 이상~200% 미만	19% + (증가율 - 100%) × 0.03
200% 이상~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0.01
500% 이상~	25% + (증가율 - 500%) × 0.0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
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
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보
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18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
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
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보건연구소법 제7조”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로 하고

제2조(수수료기준등) ②항의 “국가기관 또
는”을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품
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해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 “8인”을 “13
인”으로 하고, “위촉하는 중소기업체의”
를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및 중소기업체
의 대표”로 한다.

제10조(권한위임)을 《운영의 보고》로 변경
하고,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를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
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19호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
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에 “소비자단체의 임
원”을 삽입한다.

제4조제2항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
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21호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 및 시민생활
국장”을 “재무국장 및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학분야 교수 2인
2. 언론기관 간부 2인
3.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간부 1인
4. 경제단체 간부 1인
5. 공인회계사 1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축
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20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

◎서울특별시조례제2922호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
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
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
다.

제5조 중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을 "보건
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축산물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구 分	종 류	단 위	수 수 료
도 축 검 사	소, 말 돼 지, 양	두	590원
		두	12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도축검
사를 위해 축산물도매시장 및 축협공판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수수
료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농
수산물도매시장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23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증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개장시
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分	정 기 휴 업 일	개 장 시 간
양 곡 부 류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 과 부 류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수 산 부 류		오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 휘 부 류	매월 첫째 일요일	
약 용 작 물 부 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축 산 부 류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3조제2항의 상장수수료 및 증개수수료의
최고한도 표 구분분의 축산부류 위탁상장

수수료 중 "거래금액의 1천분의 28"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거래금액"을 "거래기

준"으로, "최저금액"을 "최저거래기준"으
로 한다.

제5조 제목과 본문 중 "거래금액"을 "거래
기준"으로 하고, 제1호 중 "500만원"을
"600가마/80kg"로, 제2호 중 "1천600만

원”을 “2천500만원”으로, 제3호 중 “선어 : 1천600만원”을 “선어 : 2천500만원”으로, “건어 : 4천만원”을 “건어 : 1천6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24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지구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지구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1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 제27조,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지구 안에 전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9조, 제46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지구 안에 전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① 3.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1985년 6월 30일 현재 존치하는 건축물의 면적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조 ②항 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그 면적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건축법 제39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최소한도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함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25호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

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26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중 종별란 “운동시설”을 “체육시설”로, “관광객

제 1654 호

시

보

1992. 5. 12

이용시설”을 신설하고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광객 이용 시설의 사용료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④

◎서울특별시조례제2927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와”를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익을 대표하는”을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28호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 요금 (면도 5km까지)	추가 요금 (매 km 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노외 주차장란 1회 주차의 2급 지 요금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 보관일로부터 30일까지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부과징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보관 중인 차량의 보관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관기간 30일 이상인 차량: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부과징수기간 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로 종료한다.
- 보관기간 30일 미만인 차량: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는 중전 규정을 적용하되, 30일이 끝 때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29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설치조례 증·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세입) 본문 중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을 “하수도 사용료, 일반 회계의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30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증·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사용료) 1항 중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2항 중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

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31호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범위,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서 감정 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토파”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 (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함) 죄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라 함은 천공 기타 행 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 등 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신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 다음 각호와 같이 고충시가지, 중충시가지, 저충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분류한다.

① “고충시가지”라 함은 16층 이상 고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역 등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 800% 이상)

② “중충시가지”라 함은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충

<p>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 550~750%)</p> <p>③ "저층시가지"라 함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공·상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 200~500%)</p> <p>④ "주택지"라 함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인 주거, 농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예상 용적률 : 100% 내외)</p> <p>⑤ "농지·임지"라 함은 농지·임지가 유효이용인 농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p> <p>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함)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여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 +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되며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종 목적대로 사용함이 원자히 곤란하다.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p>제5조(최유효 건물충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충수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 	<p>적인 충수의 규모</p> <p>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 가능한 충수</p> <p>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충수가 당해지역 내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의 충수</p> <p>제6조(건축가능 충수) ① 건축가능 충수는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별표 1)에 의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가능 충수는 보상기준은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임체이용 저해율의 산정)</p> <p>① 토지의 임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p> <p>②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alpha \times \frac{(\text{가})}{(\text{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한다. 2. "(가)"는 저해층에 의한 충별 효용비율로서 (별표 3)에서 산출한다.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충별 효용비율로서 (별표 3)에서 산출한다.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 2)에서의 저하이용률(β)에 (별표 4)에서의 심도별 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 기타 이용 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 2)에서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최유효 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 사용"이라 함)하거나 이에 유사 	

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일체이용 저해율을 산정한다.

- 일체이용 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 저해율 × 노후율 +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text{노후율} = \frac{\text{해당 건물의 유효 경과연수}}{\text{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별표 5)

단, 기존 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헌터히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판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화하여 산정한다.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충시까지는 40m, 중충시까지는 35m, 저충시까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죽정가격 × 일체이용 저해율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②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한다.

단,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토 폐(m)	한 계 심 도 초 파		
	20 이내	20~40	40 이상
보상비율(%)	1.0~0.5	0.5~0.2	0.2 이하

③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된 지하보상비가 1,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④보상비는 현금보상으로 한다.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폐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관

리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지하보상권 부분 이외의 토지에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가능 충수

1. 터널 : 폐면별 구분 판단

가. 풍화토(PD-2) 폐면					(단위 : 층)
토폐(m)	10	15	20	25	25
건축구분					
지 상	12	15	18	22	
지 하	1	2	2	3	

나. 풍화암(PD-3) 폐면					(단위 : 층)
토폐(m)	10	15	20	25	30
건축구분					
지 상	17	19	21	23	25
지 하	1	2	2	3	4

다. 연암(PD-4) 폐면					(단위 : 층)
토폐(m)	10	15	20	25	30
건축구분					
지 상	19	24	28	30	30
지 하	1	2	3	3	4

라. 경암(PD-5) 폐면					(단위 : 층)
토폐(m)	10	15	20	25	30
건축구분					
지 상	30	30	30	30	30
지 하	1	2	3	4	5

2. 개 칙					(단위 : 층)
토폐(m)	5	10	15	20	
건축구분					
지 상	7	12	19	19	
지 하	1	2	2	2	

〈별표 2〉 일체 이용률 배분표

해당지역 용적률 이용률 구분	고층 시가지 800% 이상 (670~1000%)	중층 시가지 550~750% (450~1000%)	저층 시가지 200~500% (200~1000%)	주택지 100% 내외 (60~300%)	농지·임지 100% 이상 (60~150%)
건물 등 이용률 (α)	0.8	0.75	0.75	0.7	0.8
지하 이용률 (β)	0.15	0.10	0.10	0.15	0.10
기타 이용률 (γ)	0.05	0.15	0.15	0.15	0.10
(γ)의 상하 배분 비율	1:1 -2:1	1:1 -3:1	1:1 -3:1	1:1 -3:1	1:1 -4:1
주 1) 본표의 이용률 및 용적률의 구분은 통상적인 표준을 표시한 것으로 여전에 따라 이용률 및 배분비는 약간의 보정을 할 수 있음.					
2) 이용지역 심도가 높은 터널 토피 20m 이하의 경우는 최고치를 적용함.					
3) ()내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허용치임.					

〈별표 3〉 총별 효용 비율표

총 별	고총 및 중총 시가지		저총 시가지				주 택 지
	A 형	B 형	A 형	B 형	A 형	B 형	
20	35	43					
19	35	43					
18	35	43					
17	35	43					
16	35	43					
15	35	43					
14	35	43					
13	35	43					
12	35	43					
11	35	43					
10	35	43					
9	35	43	42	51			
8	35	43	42	51			
7	35	43	42	51			
6	35	43	42	51			
5	35	43	42	51	38	100	
4	40	43	45	51	38	100	
3	46	43	50	51	42	100	100
2	58	43	60	51	54	100	
지상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 1	44	43	44	44	46	48	—
2	35	35	—	—	—	—	—

주 1. 표본의 지수는 건물가격의 임체분포와 토지가격의 임체분포가 동일하다고 전제하였다.
 2. 본표에 없는 지수는 본표의 경향과 주위상태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3. 본표의 지수는 각군의 대략적인 표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여전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음.
 4. A형이란 상층부 일정층까지 임료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며,
 B형이란 2층 이상의 동일한 임료수준을 나타내는 유형임.

제 1654 호 시 보 1992. 5. 12

(별표 4) 심도별 지하이용 저해율표

한계심도(M)	40M		35M		30M		20M	
	P	$\beta \times P$						
		0.15 × P		0.10 × P		0.10 × P		0.10 × P
0 ~ 5미만	1.000	0.150	1.000	0.100	1.000	0.100	0.150	1.000
5 ~ 10미만	0.875	0.131	0.857	0.086	0.833	0.083	0.125	0.750
10 ~ 15미만	0.750	0.113	0.714	0.071	0.667	0.067	0.100	0.500
15 ~ 20미만	0.625	0.094	0.571	0.057	0.500	0.050	0.075	0.250
20 ~ 25미만	0.500	0.075	0.429	0.043	0.333	0.033	0.050	
25 ~ 30미만	0.375	0.056	0.286	0.029	0.167	0.017	0.025	
30 ~ 35미만	0.250	0.038	0.143	0.014				
35 ~ 40미만	0.125	0.019						

- 토지가격에 잠재적 영향력을 갖는 토지이용의 한계심도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상황, 지질, 지표면 하중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40M, 35M, 30M, 20M로 구분하였음.
- 토퍼심도의 구분은 5M로 하였고,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은 일정한 것으로 하였음.
- 지하이용 저해율 = 지하이용률(β) ×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P)

(별표 5) 건물내용 연수표

용 도	구 조	(단위:년)		
		철근 및 철근 철골콘크리트	벽돌조 석 조	철골조 석 조
사무실, 청사, 은행, 학교, 유치원, 교회, 공회당, 사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방송국, 역사, 연구소, 실험실, 슈퍼마켓, 공항터미널, 체육관, 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60	55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60/55	55/50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50	50/45
(4) 벽이 기타인 것				
주택, 별장, 아파트, 점포, 여관, 호텔, 목욕탕, 요리점, 국장, 연주장, 무도장, 카페, 오락장, 구락부, 영화제작소, 병원, 진료소, 기숙사, 요양소, 변전소, 발전소, 정유장, 차고, 송수신소, 실내스케이트장,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55	50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55/50	50/45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5	45/40
(4) 벽이 기타인 것				

20-17

제 1654 호

시

보

1992. 5. 12

용도	구조	철근 및 철근 철물콘크리트	벽돌조 석조	월꼴조
○ 공중목욕탕, 어시장, 창고, 화물취급소, 격납고, 공장,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50 50/45	45 45/40	
○ 간이주택, 간이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지붕이 기타인 것			40 40/35 35/30	40 40/3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⑬	제3조(급수지역) 본문 중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한다. ※ 본문을 ①항으로 하고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천자지면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932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하철 건설 기본방식의 설정 및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를 “지하철 건설 기본방식의 설정, 공법 선정 및 민원 유발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종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유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⑬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급수의 범위) ①항 중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⑬		
◎서울특별시조례제2933호				

다”로 한다.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항을 ③항으로, ③항을 ④항으로 변경한다.

④항(중전 ③ 항)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935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체의 발행한도) 본문 중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증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규칙제2470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
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업연구관”을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방보건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지방보건연구관”을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5.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서울특별시규칙제247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

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2-7)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연구직 정원내용 중 “연구관 31”을 “연구관 31 : 보건 또는 환경 12, 보건 12, 환경 7”로, “연구사 107”을 “연구사 107 : 보건 73, 환경 3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2-118호

시의회부의안건공고

지방자치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2. 5. 9

서 울 특 별 시 장

제 1854 호

시

보

1992. 5. 12

구 분	부 위 안 건 안	주 관 부 서
조 해 안 치 의 요 구 안 (2 건)	1. 서울특별시와회사무처실의조해증개정조해안재 의요구안 2. 서울특별시지방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해증개 정조해안재의요구안	시 경 개 발 담 당 관 인 사 과

20-20

821